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8호(號)

조선총독부 철도국(朝鮮總督府鐵道局)과 오리이자동차상회(織居自動車商會) 간(間)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을 1930(昭和 5)년 7월 10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정(定)함.

1930(昭和 5)년 7월 3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조선총독부 철도국(朝鮮總督府鐵道局) 간(間)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  
오리이자동차상회(織居自動車商會)

제1장(章) 총 칙(總則)

제1조(條) 조선총독부 철도국(朝鮮總督府鐵道局)과 오리이자동차상회(織居自動車商會)의 간(間)에 있어서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[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]은 본(本) 규칙(規則)에 의(依)하여 이것을 취급(取扱)을 함.

제2조(條) 본(本) 규칙(規則)에서는 아래[左] 약호(略號)를 사용(使用)함.

1. 국(局)이란 조선총독부 철도국(朝鮮總督府鐵道局)을, 상회(商會)란 오리이자동차상회(織居自動車商會)를 말함.
2. 하물(荷物)이란 수하물(手荷物) 및 소하물(小荷物)을 말함.

제3조(條) 연대수송(連帶輸送)을 하는 범위(範圍)는 아래[左]와 같이 함.

1.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凉里), 철원(鐵原), 복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, 북청(北靑), 청진역(淸津驛) 및 도문서부선(圖們西部線) 각(各)역(驛: 간이역[簡易驛] 및 중성역[鍾城驛]을 제[除]함과 상회(商會)의 경원(慶源), 성천(城川) 및 신아산(新阿山) 정류소(停留所)와의 상호(相互) 간(間).
2. 국(局)의 도문동부선(圖們東部線) 각(各)역(驛: 간이역[簡易驛] 및 신아산역[新阿山驛]을 제[除]함과 상회(商會)의 경원(慶源), 성천(城川) 및 중성(鍾城) 정류소(停留所)와의 상호(相互) 간(間).
3. 국(局)의 부산(釜山), 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용산(龍山), 경성(京城), 평양(平壤), 신의주(新義州), 상인천(上仁川), 인천(仁川), 왕십리(往十里), 청량리(淸凉里), 철원(鐵原), 복계(福溪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신북청(新北靑), 성진(城津), 길주(吉州), 명천(明川), 주을(朱乙), 나남(羅南), 북청(北靑), 청진역(淸津驛) 및 도문서부선(圖們西部線) 각(各)

역(驛: 간이역[簡易驛] 및 중성역[鍾城驛]을 제[除]함)과 상회(商會)의 중성(鍾城), 신아산(新阿山) 간(間) 경유(經由) 국(局)의 도문동부선(圖們東部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 및 신아산역[新阿山驛]을 제[除]함)과의 상호(相互) 간(間).

제4조(條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여객(旅客) 및 하물(荷物)의 접속역(接續驛)은 중성(鍾城) 및 신아산(新阿山) 역(驛)으로 함.

제5조(條) 운임(運賃)의 할인(割引) 및 환급(還給)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1전(錢) 미만(未滿)의 단수(端數)는 국(局), 상회(商會) 각각(各各) 별도(別途)로 이것을 절사(切捨)함.

제6조(條) 상회(商會)가 경영(經營)하는 구간(區間)은 자동차(自動車)로 함.

본(本) 연대운송(連帶運送)에 있어서는 자동차구간(自動車區間)의 전후(前後)의 국선로(局線路)는 이것을 연속(連續)한 것으로 간주(看做)함.

제7조(條) 국(局) 및 상회(商會)의 운송(運送)에 관한 규정(規定)은 본(本) 규칙(規則)에 저촉(抵觸)하지 아니하는 한(限) 연대운송(連帶運送)에 대하여 각(各) 그 소관(所管) 내(內)의 운송(運送)에 대하여 효력(效力)이 유(有)함.<sup>1)</sup>

---

1) 역자: 제2장(章) 여객운송(旅客運送)는 생략하였다.